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1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20. 6. 16.)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해임 및 해촉(안 제7조)

1) 군수의 단장 해임 규정 신설

-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2) 단원의 해임사유가 발생할 시 단장이 해임 ▷ 군수가 해임

나. 소집 등(안 제11조)

1) 소집수당 신설

- 소집수당 단가 : 일반직 9급 시간외 근무수당 / 1일 최대 8시간

※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8시간 초과 가능

다.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16조) \*

1)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2년 소요예산 10,000천원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0. 1. ~ 10. 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4호서식까지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다.

**제6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출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

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군수가 방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

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위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

칙」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

어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지명·선출된 단장·부단장·간사·대표 등과 방재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평창군 지역자율방재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수

[별지 제2-1호 서식]

##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전기	예)전기기사		보유장비 (종류 / 대수)	덤프	예) 15톤 1대			
	가스					굴삭기	예) 0.6w 1대		
	보일러				크레인	예) 5톤 1대			
	용접	예)용접기능사			경운기				
	인명구조	예)심폐소생술			트랙터				
	중장비	예)굴삭기운전기 능사			기타				
기타자격증	재난관련 자격증 기재 (의사, 간호사, 건설기술, 응급구조, 아마추어 무선통신 등)								
재난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체명		대표자	○○○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원 상해보험가입 및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명부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 재난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혈액형, 자격증, 보유장비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탈퇴시 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가. 항목 :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목적 : 단체 상해보험 가입  
다. 보유기간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탈퇴시 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제3자 제공 내용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평창군 및 읍면, 강원도,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기관, 보험회사, 평창군자원봉사센터  
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방재단 운영·관리, 교육·훈련, 포상, 보험가입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혈액형, 자격증, 보유장비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탈퇴시 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동의거부 시 단원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활동확인서

성명		(인)	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 방재단 대표		성명 (인)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지역자율방재단원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를 말합니다.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 활동계획서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 출 입 증

<b>출 입 증</b>
사 진 (3×4cm)
<b>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b>

← 5.5cm →

<b>지역자율방재단원증</b>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평창군수 (인)

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휘장) 삽입

↑  
7.7  
c  
m  
↓

[별지 제7호서식]

## 요양 [ ], 장애 [ ], 장제 [ ], 유족 [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급계좌확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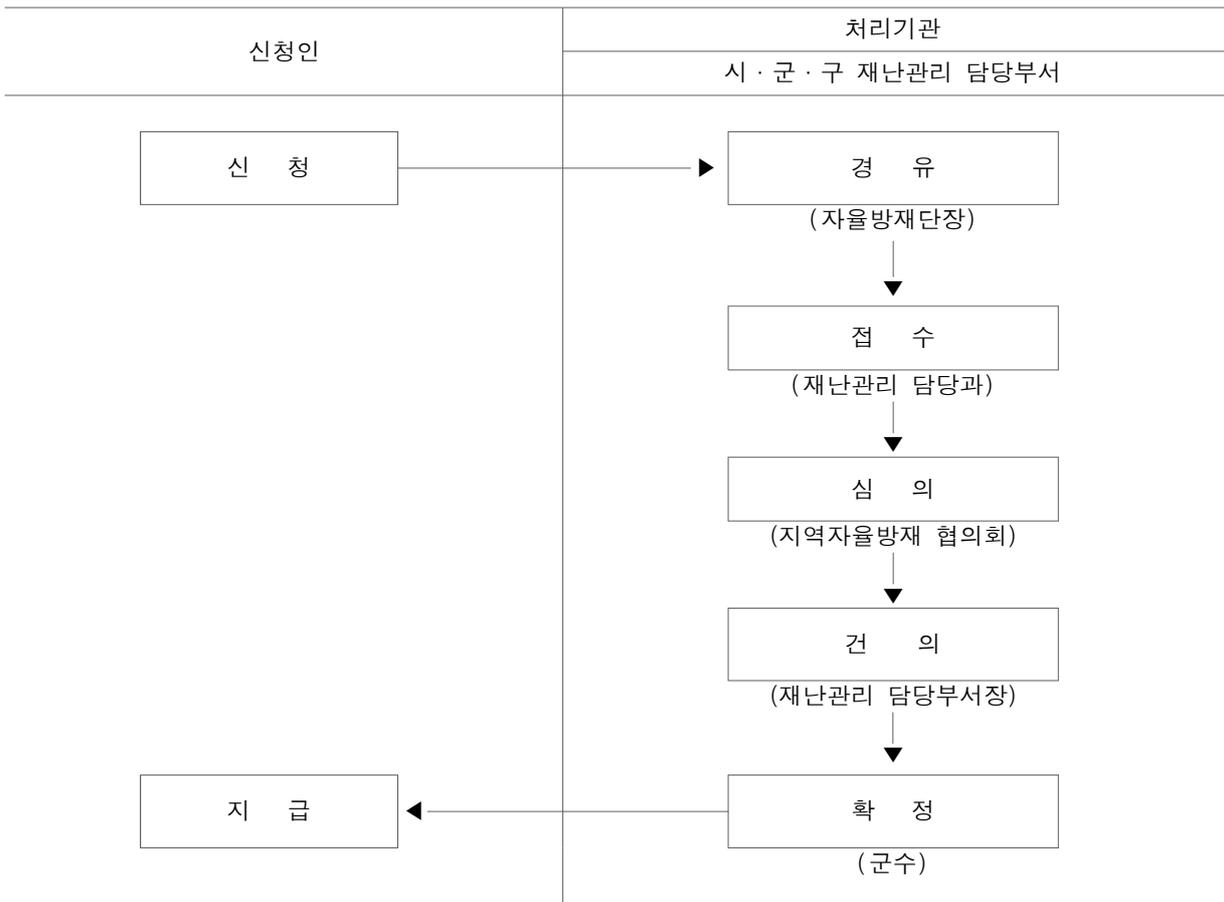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관계법령 발취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4>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건설과장 오현웅
연락처	(033) 330-2406